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하고 28명 의원님들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중 제3호 ‘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’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 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등의 용품은 명시되어 있으나, 안전장비 및 용품은 없어 ‘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

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(안 제57조제1항제5호)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